

【피감사 공무원 선서서】

선

서

본인은 제천시의회(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)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습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05년 1월 19일

기 관 명 : 제천시의회

소속(직위) :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

선 서 인 : 윤종현(인)

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피감사 공무원 선서서】

선 서

본인은 제천시의회(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)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05년 1월 19일

기 관 명 : 제천시

소속(직위) : 시립도서관장

선 서 인 : 김 흥래 (인장)

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피감사 공무원 선서서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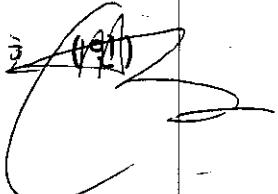
선 서

본인은 제천시의회(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)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05년 1월 19일

기 관 명 : 제천시

소속(직위) : 문화관광과 (행정6급)

선 서 인 : 고고학 

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민간인선서서】

5

선 서

본인은 제천시의회(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)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05년 1월 19일

주 소 : 인천시 구포동 풍남 ① 102-1304

주민등록번호 :

선 서 인 : 윤 재학 ④ 102-1304

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민간인선서서】

선 서

본인은 제천시의회(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)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습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05년 1월 19일

주 소 : 인천남구 주안3동 351-29

주민등록번호 :

선 서 인 : 최 장백 

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